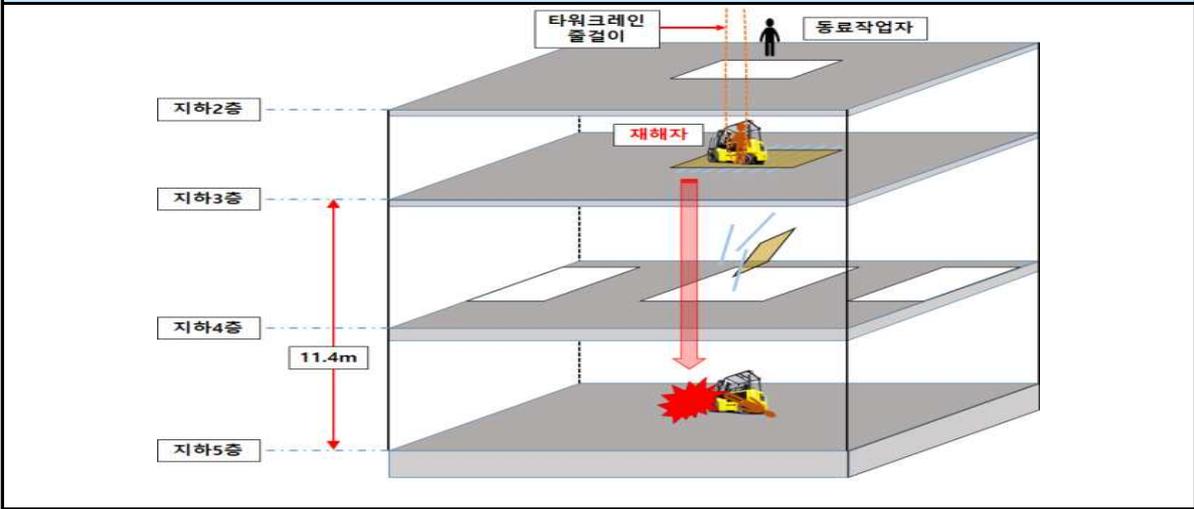


타워크레인으로 지게차 양중작업 중 자재인양구 덮개 붕괴되며 추락

공사명	○○ 주상복합 신축공사	발생일시	2020. 6. 29.(월). 10:10
재해형태	붕괴	재해정도	사망 1명
소재지	경기도 ○○시	공사규모	지하4층, 지상18층, 1개동
재해개요	2020. 6. 29.(월). 10:10경, 재해자가 지하3층 자재인양구 덮개(각파이프+합판) 위에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지게차(자체중량 약4톤)를 올려놓은 후 바퀴에 끼인 슬링벨트를 풀기 위해 재해자가 지게차에 탑승하여 운전하는 순간 자재인양구 덮개가 붕괴되며 기계식주차장 PIT층 바닥으로 지게차와 함께 추락(H≒11.4m)하여 사망		

재해상황도



안전대책	<p>※ 지게차를 지하층에서 사용해야 할 경우 주차램프 형성 후 주차램프를 통하여 운전해서 이동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불가피한 경우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된 자재반입대 설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조물 안전성 평가 및 위험성 제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주는 구조물이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 사전에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함 ○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경우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 ○ 관리감독자의 유해·위험 방지 업무 수행 철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·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조치하도록 하여야 함
------	---